

현장공모연구 지원사업 예산편성 기준단가

- 연구참여기관에 소속된 인력의 경우 인건비, 회의수당, 원고료, 조사수당(교통비 제외) 등 지급 불가함
- 연구내용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되, 아래 항목의 지출 시 제시하고 있는 기준단가를 준수하여야 함
- 연구과제 수행 전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따라 본원과 기관 간의 예산조정이 있을 수 있음
- 예산편성 기준단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함

□ 공동연구 진행 시

-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외부 연구인력에 적용
- 초빙연구원, 공동연구원, 위촉연구원, 연구보조원으로 구분

1. 초빙연구원

: 일정기간 기관에 상근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인력

- 초빙연구원 지급기준

직 급	등급	자 격	금 액(단위: 원/월)
초빙연구위원	A	· 부교수 이상,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	경력, 연구실적 등을 참고하여 원장이 정함
	B	· 조교수,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	
초빙연구원	A	· 박사학위 취득 후, 해당분야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	2,925,855원 이내
	B	· 박사학위 취득 후, 해당분야 연구경력 3년 미만인 자	2,658,261원 이내
※ 초빙연구원은 상근(주5일 근무)을 원칙으로 하며, 비상근의 경우 주당 근무일수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함			

※ 기획재정부 지침 참조

※ 기획재정부 ‘2019년도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’ 에 따라 인건비 1.8% 증액하여 산정함

2. 공동연구원

: 연구의 일부를 책임지는 비상근 전문 연구인력

○ 공동연구원 지급기준

등급	자격	금액(단위: 원/월)
A	· 대학 조교수 이상,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	2,174,805원 이내
B	· 박사학위자,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	1,638,679원 이내
※ 공동연구원은 비상근직이며, 주당 2일(16시간) 투여 기준으로 산정함 ※ 연구 분담율(참여율)에 따라 계약 금액 적용함		

※ 기획재정부 ‘2019년도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’에 따라 인건비 1.8% 증액하여 산정함

3. 위촉연구원

: 상근 또는 비상근의 준전문 연구인력

○ 위촉연구원 인건비 지급기준

등급	자격	금액(단위: 원/월)
A	·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· 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· 단, 전문 업무 담당자는 업무특성상 약 10~20만원 증액 책정할 수 있음.	월 2,284,297원 이내
B	· 학사학위 취득 후 연구 또는 실무 경력 3년 미만	월 1,653,744원 이내
※ 식대를 포함한 것이며, 월단위로 지급함 ※ 위촉연구원은 상근(주5일 근무)을 원칙으로 함 ※ 비상근직의 경우, 월 22일 근무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함		

※ 기획재정부 ‘2019년도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’에 따라 인건비 1.8% 증액하여 산정함

※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한 것이며,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

4. 연구보조원

: 연구보조원과 행정보조원, 조사원으로 구분

○ 연구보조인력 인건비 지급기준

구분	자격	금액(단위: 원/월)
연구보조원	· 학사학위자	1,648,871원 이내

행정보조원	· 학사과정 및 전문대 졸업자	1,236,695원 이내
조사원	· 조사원(단기고용, 자료입력원 등 포함)	66,800원/1일/1인
수화통역사	· 수화통역사	100,000원/1시간/1인
※ 연구보조원과 행정보조원은 조사방법론을 수강한 자를 원칙적으로 선발하고, 상근(주5일 근무)을 원칙으로 함 ※ 조사원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상근을 원칙으로 함. 인건비는 중식비를 포함함 ※ 수화통역 수당은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부설 서울특별시수화통역센터지역지원본부 수화통역수당표를 기준으로 함 ※ 비상근직의 경우, 월 22일 근무를 기준으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함		

※ 연구보조원 및 행정보조원 지급기준의 경우 행정자치부 ‘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(2019년 기준)’ 에 따라 산정함

※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%로 산정한 것이며,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

5. 기타

: 연구 진행상의 자문(전문)회의, 연구보고서 평가(심사), 토론회(공청회) 원고 집필 및 발표, 번역 의뢰 부문 인건비 지급기준

구분	내용	지급기준	기준액(단위:원)	비고
회의비	자문(전문)회의 참석 수당	· 자문위원, 관련 전문가 등	100,000원~150,000원	· 기본 2시간 미만 100,000원 · 기본 2시간 이상 150,000원
보고서 평가 및 심사	보고서 평가 및 심사 수당	· 연구보고서	200,000원 이내	· 기본 1편
원고료	연구보고서 등 원고료	· 원고(국문)	12,000원	· 기본 A4(80열 25행) 1매
		· 원고(외국어)	40,000원~80,000원	· 기본 A4(25행) 1매
토론회 및 공청회	패널 수당	· 좌장 및 발표자, 토론자	120,000원~	· 기본 1시간 120,000원 · 1시간 초과 100,000원
조사	설문조사	· 피조사자 수당(사례) 지급	5,000원 이내	·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
	면접조사	· 피조사자 수당(사례) 지급	50,000원 이내	
	포커스그룹인터뷰	· 인터뷰이 수당(사례) 지급	100,000원 이내	
	델파이조사	· 피조사자 수당(사례) 지급	50,000원 이내	

번역 및 통역 의뢰	문서	· 한국어 → 외국어	60,000원~90,000원	· 기준 : A4(25행) 1매 · 감수료 포함
		· 외국어 → 한국어	30,000원~45,000원	· 기준 : A4(80열, 25행) 1매 · 감수료 포함
	통역	· 통역료(영, 중, 일, 불, 러, 스페인어)	900,000원 이내	· 기준 : 1인 6시간까지 (6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,000원 이내 지급) ※ 기타 언어의 경우 실비 적용

※ 회의참석 수당은 기관 직원(외부연구진)에게 지급하지 아니함. 단,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외부연구진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
 ※ 회의 참석자에 대한 교통비 실비 지급함
 ※ 외국어 원고 집필의 경우 상기 기준을 근거로 별도 차등 적용 가능함
 ※ 토론회 및 공청회 패널 수당은 관련 원고료가 포함됨
 ※ 번역 의뢰의 경우 각국 언어에 따라 번역료를 차등 지급 가능하며, 번역물의 난이도에 따라 기준 단가에서 하향조정 또는 상향조정 할 수 있음
 ※ 회의비, 패널 수당 지급 기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「2017년도 지출예산 집행기준」을 참고함
 ※ 원고료, 번역비 등 통역 의뢰 지급 기준은 한국연구재단의 2019년 「연구용역비 산정·집행기준표」를 참고함

6. 경인쇄 기준요금

<전자조판 기준>

(단위: 인쇄면당 원)

절 수	지 질	50부까지	10부마다
8 절	신 문 용 지	15,080	132
	중 질 지	15,270	157
	백 상 지	15,370	183
10 절	신 문 용 지	11,960	122
	중 질 지	12,040	140
	백 상 지	12,150	157
16 절	신 문 용 지	8,070	81
	중 질 지	8,120	91
	백 상 지	8,180	101
25 절	신 문 용 지	5,510	72
	중 질 지	5,540	74
	백 상 지	5,580	80
32 절	신 문 용 지	4,150	47
	중 질 지	4,160	50
	백 상 지	4,190	55

- 1) 위의 단가는 일반적인 사양에 대한 것이므로 활자호수의 크기, 조판 과정, 용지의 절수와 평량 등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거나 기타 다른 특성이 있는 인쇄물은 경인쇄요금 계산체증표를 적용하여야 한다.
- 2) 특수한 기획이나 도안을 요하는 인쇄물의 기획 또는 도안료는 실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다.

7. 여비 지급기준

구분	지급기준
여비(시내)	· 4시간 이내: 1인 1일당 10,000원 · 4시간 이상: 1인 1일당 20,000원
여비(시외)	· 교통비: 실비 지급 · 일비: 1인 1일당 20,000원 · 숙박비: 1인 1박당 50,000~70,000원 (서울특별시 70,000원, 광역시 60,000원, 그 외 지역 50,000원) · 식비: 1인 1일당 20,000원

※ ‘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지침 기준단가(2018년 기준)’ 에 따라 산정함

8. 기타 운영비 지급기준

구분	지급기준
자문회의 경비	· 식비: 1인당 30,000원 이내 · 다과비: 1인당 7,000원 이내

※ ‘민간경상보조사업 관리지침 기준단가(2018년 기준)’ 에 따라 산정함